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1206 호 2019. 12. 3.(화)

공 고	
-----	--
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1282호[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] **1**

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 □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
회				
 람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1282호

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을 제고하고,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정 목적, 설치, 기능,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- 나. 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- 다.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1조)
- 라.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3. 관계법령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

4. 의견제출

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: shtkdal98@korea.kr

2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북구청)

3) 팩스 : (052)241-766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사회복지과(전화:052-241-766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1부.
 - 2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제23조의 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- 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사한다.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 - 1.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
 - 2.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
 - 3.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4. 북구 관내 노인·사회복지단체(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) 대표
 - 5.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자·보호자 대표 등
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장기요양 지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.

- 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
 - 2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
 - 3.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 - 4.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7조(위원의 해촉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
 - 3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
 - 4.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- 5. 직무대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제8조(회의의 고지)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9조(회의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장기요양기관의 적합 심사를 할 때에는 각 위원의 [별표 1]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총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적합 결정하고, 80점 미만이면 부적합 결정한다.
 - ③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.
 - 1. 적합
 - 2. 부적합: 부적합 사유 제시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- 제10조(의견 진술 등)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신청 기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1.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
- 2.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「노인복지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
- 3.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「건축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

[별표 1]

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 시설 및 인력
 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
 □ 적합

 기준 충족여부
 시설 및 인력기준 적합여부(※ 부적합 시 별도의 심사 없이 부적합 결정)
 □ 부적합

항목	세부 기준 및 배점(안)	점수			
	심사자료 :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				
	□ 대표자(법인)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: 부당청구, 노인학대, 재무회계규칙 위반(예·결산 미승인 등), 평가·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				
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 의 서비스 제공 능력 (50점)	<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> ① 대표자(법인)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- 업무정지일이 총(누적) 180일 이상인 경우(지정취소, 폐쇄명령 포함) 또는 노인학대,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: 감점 20점 - 업무정지일이 총 91일~180인 경우 : 감점 15점 - 업무정지일이 총 31~90일 이하인 경우 : 감점 10점 -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: 감점 5점 ※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△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: 종시자 인당 감점 5점 △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: 종시자 인당 감점 10점 □ 급여제공 이력 :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(ex.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				
	대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) <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> △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,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시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: 감점 20점 △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,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시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: 감점 15점 △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,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시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: 감점 10점 □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,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□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,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관련 전문성 □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				
서비스 제공 계획의	심사자료 : 운영규정, 사업계획				

충실성 및 적절성 (15점)	□ 운영규정,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□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				
	심사자료 : 사업계획, 시설현황 등				
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(15점)	□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,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□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□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□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(ex.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,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) □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(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, 등기부등본,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)				
	심사자료 : 사업계획, 인력현황 등				
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(20점)	□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 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□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, 상해보험,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□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 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□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(포상, 휴가 제도 등)를 마련 하였는지 여부 □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(ex. 공개모집 여부 등) □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□ 직원의 건강검진, 근골격계 질환 검사(연 1회 이상)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□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				
※ 장기요양	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위원 심사점수 평균이 <u>80점 이상</u> 이어야 함				
	□ 총 심사점수:	Ž			
	20 년 월 일				
	20 년 월 일				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

○ 의 견 제 출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	견	비고
	찬성	반대	<u> </u>	ت 	01 17